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최근 전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속 발생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사료 운반차량에 의한 가축 질병 전파·확산 차단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근 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2.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3. 지 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4.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의 소유자 등
5. 기 간 : 2021. 03. 08. ~ 별도 조치 시 까지
6. 내 용

가.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진입 금지 조치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나. 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농수산과(☎ 052-241-8082)